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보다나은 정부
http://www.motie.go.kr		

2019년 3월 28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3.27(수)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3. 27.(수)	담당부서	불공정무역조사과
담당과장	정병락 과장(044-203-5880)	담 당 자	나한균 사무관(044-203-5882)

업종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 개최

-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강화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3.27.(수)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무역협회, 철강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일시 및 장소 : '19.3.27.(수), 15:00~ /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회의실, 참석자 :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신고센터 관계자 등 23명

** 불공정무역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적발하기 위하여 '07.9월부터 주요 업종별 협·단체를 신고센터(현재 19개)로 지정·운영중

○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및 국내산업 피해 구제를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아가고, 불공정무역행위를 감시·적발하는 신고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기간을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확대하는 등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 조사신청 기간 연장(1년→2년), 원산지표시 위반 벌칙 강화(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에 관한 법률' 개정 중(산중위 계류중('19.3))

○ 신고센터는 당해 업종 물품의 수출입 감시 및 현장조사 강화를 통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되도록 노력하고, 업종별 간담회 및 제도설명회 등 현장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 한편,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수출입·제조·판매 금지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품질 거짓·과장 표시, 수출입질서 저해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로 규정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는 신속한 조사절차와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피해기업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로, 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면, 해당업종의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면 된다.

○ 무역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해 판정하여, 시정조치 등을 통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한다.

* 중소기업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02-2124-3165))

□ 신고센터 간담회를 주재한 무역위원회 권오정 무역조사실장은

○ "신고센터가 해당업종의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와 제도 홍보 등 불공정무역행위 근절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과정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무역위원회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보다 더 강화하고, 국내산업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개요
붙임 2.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개요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나한균 사무관(☎044-203-58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개요**

1. 개념 및 유형

□ 개념

○ 불공정무역행위는 수출입거래에 있어서 경쟁원리와 거래질서를 침해하여 경쟁 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무역행위

○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는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고 무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 불공정무역행위의 유형(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제1항)

지식재산권 침 해	○ 대한민국 법령·조약에 의해 보호되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 등을 - 해외에서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 수입하거나,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 수출하거나, 수출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위 반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 등, ○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 등, ○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을 -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품질거짓·과장 표시	○ 품질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 등을 -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수출입질서 저해	○ 수출입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 등의 수출입·분쟁발생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외 신용을 손상시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조사절차

조사신청 (신청인 ⇨ 무역조사실)
· 누구든지, 서면신청(조사신청서+증빙자료)
·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직권조사
· 불공정무역행위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무역조사실 / 위원회보고)
① 신청기간, 신청서류 구비요건 검토, 보완
② 조사신청 후 20일내 결정

잠정조치
① 신청인의 잠정조치 신청(담보제공)
② 무역위원회가 시행여부 결정
③ 피신청인에게 잠정조치 명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무역조사실)
· 서면조사 원칙, 면접 또는 현지조사 가능
· 외부전문가 감정, 기술설명회 등
· 사유발생시 조사 중지 및 종결
·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판정

피신청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 제재조치(안)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의견제출 기회 부여(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산업부 장관 의견청취
· 시정조치(안)에 대해 산업부장관(소관과) 의견조회

최종판정 (무역위원회)
① 조사개시 후 6월내 판정(2월씩 2회 연장 가능)
·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 제재조치 수단 및 수준 결정
② 지재권 침해 기판정물품 확인

제재조치 시행 (무역위원회 ⇨ 피신청인)
· 시정조치 명령(시정조치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과징금 부과

이의신청 ((피)신청인 ⇨ 무역위원회)
·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내

이의신청 심의결정 (무역위원회)
· 신청일로부터 60일내 결정(30일 연장 가능)

붙임2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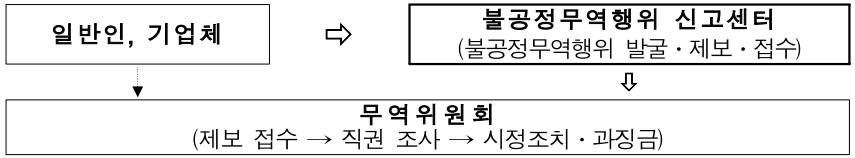
□ 신고센터 개요

○ (목적) 산업 현장에서의 불공정무역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적발하기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지정·운영 ('07.9월~)

○ (기능) 불공정무역행위 발굴 및 상담, 발굴된 건을 무역위 조사와 연계, 당해 업종 물품의 수출입 감시 및 동향 분석, 홍보활동

- 불공정무역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 수집, 신고센터의 제보로 조사·개시되는 경우 무역위·신고센터 합동조사 실시

< 업무 추진절차 >



□ 신고센터 현황 (19개소)

신고센터명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www.e-tipa.org	02-3445-3763
한국지식재산보호원	www.koipa.re.kr	02-2183-5888
한국의류산업협회	www.kaia.or.kr	02-528-0116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www.kowic.or.kr	02-422-6690
한국기계산업진흥회	www.koami.or.kr	02-369-7852
대한안경사협회	www.optic.or.kr	02-756-1001
한국산업용재협회	www.kimta.kr	02-2275-4071
한국온라인쇼핑협회	www.kolsa.or.kr	02-784-4114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www.kotoy.or.kr	02-795-9505
한국판유리산업협회	www.flatglass.or.kr	02-3453-7991
한국베어링공업협회	www.kobema.or.kr	02-784-1705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www.kmdia.or.kr	070-7725-8730
한국철강협회	www.kosa.or.kr	02-559-3558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02-6000-5518
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	070-8709-8614
한국완구협회	www.koreatoy.or.kr	031-348-8674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kocla.org	02-517-6450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www.kea.org	02-6388-6072
한국저작권보호원	www.kcopa.or.kr	02-3153-2712